

제42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2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0)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2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8)
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5)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6)

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0)
 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1)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3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3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3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

상정된 안건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4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4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4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4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4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4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4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4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4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4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4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4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4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4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4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	4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4
.....	4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4
.....	4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0)	4
.....	4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4
.....	4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4
.....	4
2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8)	4
.....	4
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5)	4
.....	4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6)	4
.....	4
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0)	4
.....	4
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1)	4
.....	4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4
.....	4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4
.....	4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4
.....	4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4
.....	4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4
.....	4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5
.....	5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5
.....	5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5
.....	5
3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5
.....	5
3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5
.....	5
3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5

(14시02분 개의)

○**소위원장 문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연일 폭우로 인해서 국민들은 어렵지만 또 저희 국회의원의 할 일은 열심히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일이니 이 일 또한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법안소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0)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5)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8)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4)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4)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1)
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2)
1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3)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2)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9)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0)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2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18)
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355)
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956)
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80)
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1)
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7)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
- 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8)
 - 35.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 3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 3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14시03분)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일정 1항부터 37항까지 3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십시오.

5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특히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개정안에서는 잔여 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주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어린이법인은 출범 자체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정책에 따라 취약지역에 건설된 거라서 요즘 저출산으로 보육 수요가 많이 감소하면서 어려워진 상황인데 자발적 구조 개선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 규정을 두어서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조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보통합에 따라서 어린이집 관리 감독 기관이 교육부로 바뀌기는 했지만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7페이지입니다. 특정인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라 목적사업 변경 등으로 다른 사업으로 출연하는 경우 별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 부담을 좀 완화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일단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교육부는 전진숙 의원안의 경우 사회복지어린이법인이라고 특정해서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보조한다고 그냥 강행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 정도로 수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 안이 5개나 있기 때문에 정을호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항별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정을호·전진숙·성일종·서지영 의원안 6조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위해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항목에 어린이집 평가 외에도 해산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모든 법안에서 43조의3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은 공통적으로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견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43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해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령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이견 없습니다.

다음, 자료 10쪽 하단입니다.

정을호·전진숙·이개호·서지영 의원안 43조의3 제3항 및 11페이지의 성일종 의원안 43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법인 해산을 위해서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정부 역시 이견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정을호 의원안 제43조의3 제4항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일종 의원안의 43조의3 제3항, 서지영 의원안 제43조의3 제4항 후단, 이개호·전진숙

안의 경우 제43조의3 제5항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보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목적사업을 위해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나 정을호 의원안에 써 주신 ‘즉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점이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만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을호·전진숙·이개호 의원안 제43조의3 제5항 및 서지영 의원안 제4항, 성일종 의원안 제6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정을호 의원님은 잔여재산을 영유아 교직원에 대해 편입위로금 퇴직위로금 이것 지급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위해 잔여재산의 특정인 귀속, 유사한 목적 법인에 출연하는 특례 신설에는 동의합니다만 편입위로금이나 퇴직위로금은 타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바로 대두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신중하게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 폐지 시에는 폐지 2개월 전까지 전원 조치하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권리보호 절차들은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금 이런 부분은 조금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교육부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음, 자료 13페이지 제43조의3 제6항은 법인의 해산인가,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개호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현재 현행법상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능 보강을 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해서 이개호 의원님 안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보강하는 안으로 교육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의 제43조의3제7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인데 이것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15·16페이지 제54조입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해산 인가 및 재산 처리 방법을 위반할 시 가해지는 벌칙 규정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즉시’ 부분만 정을호 의원님 안에서 삭제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안은 이개호·전진숙 의원님 두 분이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제43조의4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추가·변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정부 역시 법인 해산에 앞서 법인의 목적사업 추가 및 변경을 통해 법인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할 필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진숙 의원님 안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셨는데 법인의 정관 변경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로 인가 주체를 변경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개호 의원님 안은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법에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하

고 계십니다.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 취약지역 내에 보육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개정안들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경비 그런 것을 추가로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24페이지 보시면 의원님들 개정안은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 추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서 산간벽지 농어촌 이런 곳에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 과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사회복지법인은 90년대 중반에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성을, 90년대 이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또는 새마을유아원 이렇게 해서 한 400개의 비영리법인이 있었고요. 95년부터 99년까지는 보육시설 3개년계획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신축비 지원, 농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계층 진입 유도 정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000개가 넘게 됐는데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신축비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 지원 조건을 강화해서 신규 진입 이후 정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이 1032개소 있고요. 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면 117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부터 24년도까지, 사실은 저희가 2010년부터 보육은 무상보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자체에 잔여재산 귀속하고 타 법인에 출연하는 게 한 5개, 타 사회복지법인 하는 게 17개, 합병이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있는데 대도시에 25.5% 또는 중소도시에 19.8% 그러면 이게 벌써 40%가 이미 지방에 농어촌에 있고 사실은 50%의 정원 충족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폐원하는 곳도 어린이집이 73개소, 폐원한 곳도 24개소 이래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전체 정원 충족률이 50.2%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평균이 국공립은 78.4% 그다음에 민간은 67.7%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 50% 미만인 곳이 24년도 현재 596곳이 있고요. 1173개소 중에 20% 미만인 곳도 벌써 155개소가 있어서 기본재산 지원금 이런 것 부채 현황 보면 기본재산이 5억 19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평균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부채 평균은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고요. 전체 기본재산은 한 4억, 부채 총액은 4000만 원 그다음에 부채 총액 1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원 충족률 50% 미만인 곳은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소위원장 문정복** 세세한 것까지는, 저는 기본 취지를 말씀해 달라고……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그렇게 해서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위원장 문정복**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법인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많이 못 미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많은데 그런 곳들은 충족률이다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정 위원** 그런데 왜 법인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을 청산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가게 됩니다. 즉 자기 게 안 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실장님……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사립대학 퇴출할 수 있는 근거법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이 국공립도 아니고 사립대학들인데 왜 해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지원금까지 줘야 되느냐 했지만 대학들은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어쨌든 대승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어촌에서 정원 충족률이 안 되는 어린이집들이 법인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이 법인들만 농어촌에 있어서 이 법인 부분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그게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아니요.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은 자기 결로 될 수 있고 여기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은 국가의 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그것은 통과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지요. 국공립대학인 경우에는 국가 지원 사항이 당연히 맞는데 사립대학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영역으로 많이 번지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는 이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가정이든 저출생 때문에 충족률이 떨어지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왜 법인만 그러면 퇴출할 수 있는 장려금, 단여를 뭐라고 써야 됩니까? 해산 장려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주느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린이집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뭐가 있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걸로 해서 이 업무가 그대로 됐었습니다. 다만 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게 되면 나도 그렇고 제가 재산을……

○**고민정 위원** 아니 아니,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기관들이 장애인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노인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고민정 위원** 그중에서 어린이집도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여기는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법인이 1000개소가 넘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법인만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고민정 위원** 왜냐하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도, 거기는 아동은 아니겠지요, 어린이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 또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의 법인 산하기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하고 그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려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2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해산할 경우에는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귀속이 아니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는……

○**고민정 위원** 그러면 귀속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면 원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던 그분들한테는 하나도 가는 게 없고 그냥 손 털고 나와야 되는 꼴이라, 이게 지금 사립대학하고 비슷한 겁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말고 다른 기관들은 귀속만 되는 거잖아요, 현재.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른 기관은 결론적으로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과 다른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3쪽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3쪽의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이나 이런 게 보육으로 딱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지만 자본·경영 규모가 상당히 열악하고 영세하다, 그리고 다른 걸로 뭘 어떻게 사업 다변화할 만한 것도 없다, 또 저출산으로 굉장히 보육수요가 줄어들어서 어렵고, 또 어린이집 건물을 용도변경 하려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 협정 결 반환해야 되는 문제, 리모델링 비용 부담 문제가 있어서 다른 법인에 비해서 자발적 구조개선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복지법인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일종의 어떤 혜택을 주는 법안인 것은 맞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이 법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저는 당연히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뭐냐하면 이건 사실은 취약계층 위주로 설립해 준 어린이집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그렇게 농어촌에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도시가 커지고 도시가 확대되면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이미 발전해서, 어찌 되었든 25.5%는 이미 대도시가 되었고 거의 한 20% 정도가 중소도시가 된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도 농어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려워졌느냐, 지금 출생률이 너무 낮아지고 인구가 도시로 밀집되다 보니 이제는 인구소멸지역들이 너무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운영할 수 있는 한계점에 임계점에 다다른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것을 해산해야 되느냐, 다른 사회복지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딱 보육시설 하나만 하게끔 단일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워지면 법인 자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을 닫자고 하니 지방정부나 이런 데 재산이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고 죽 이어 왔던 보육시설 관계자분들 법인 관계자분들이 그냥 대책 없이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약간 먼저 선제적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먼저 가면서 이 법이 후속으로 나오는 거고 이 법이 끝나고 나면 저희 교육위에서 또 해줘야 될 게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왜냐하면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급속도로 성장한 아동 출생률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가 인프라를 다 못 대니 민간의 자본을 가지고 교육 인프라를 보육 인프라를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출생률이 낮아지고 점점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니 그러면 민간이 투자한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너희 폐원하고 나가’ 이렇게 그냥 둘 것이나, 그렇다고 폐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절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저출생의 보육시설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조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저한테 기회 주신 거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고민정 위원** 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괜찮아요?

○**정성국 위원** 양보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은 약간 배치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지요, 아니지요.

○**고민정 위원** 왜냐하면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근거법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는 어린이집은 다른 걸로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이 법안은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필요가 없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되었든 액시트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줘야 되는 건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액시트하는 방법으로 폐원 또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지요.

○고민정 위원 아니, 안 된다면서요.

○정성국 위원 저는 이해됩니다.

고민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고민정 위원 예.

○정성국 위원 저는 여기에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3페이지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3페이지 개정안 배경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라는 그 취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인데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 같은 데 세워졌었는데 지금은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 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좋은 의도로 출발한 거지만 지금 많이 타격을 입고 있고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몰리는 이런 부분을 국가가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지역구 가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 대표들 10명 정도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폐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 부산진구갑에도 폐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그런 상황인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쪽이 자꾸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보다 이전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자체부터, 형평성을 떠나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기회를 주고 또 길을 터 주는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대적 흐름에 지금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이해를 합니다, 법을 보면서.

물론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아까 나온 대로 특정 단체를 찍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법안 자체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그때 민간 어린이집 담당자들 말씀 들어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러면서 지원도 안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당신들이 시설 개선하고 당신들이 시설 잘 만들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여 놓으면 학부모들이 많이 온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기관에서. 너희 돈 들여 가지고, 어린이 수가 감소해 가지고 지금 회비도 줄어들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데 시설 개선 바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기관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법안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부터 좀 새로운 활로를 터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일단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서지영 위원 그다음에 저.

○소위원장 문정복 예, 서지영·김민전 위원님.

○정을호 위원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아까 저희 제안설명에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어린이집은 1990년대 인구 급증기에 국가가 민간단체에서 좀 해 달라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개인 재원을 출연해서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자자체에서 보조받는 것 맞지요? 그러면 혹시 재산 증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뭐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재산 증식이어도 그게 개인적인 재산 증식이 아니니까 다 법인으로 그냥 가는 거지요.

○정을호 위원 거의 그렇지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정을호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다르게 한 가지, 본인들이 출연한 재산이 있다는 거지요, 기본이?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출연한 만큼 어느 정도, 다 해산을 하고 남은 자산에서 공로에 어느 정도 임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주요 요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저는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부분적으로는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목적사업 변경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이것은 좀 의문이 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 또 농어촌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 어떤 정부의 공적 보육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그 공로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잔여재산 특례가 유보통합이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퇴로구조를 먼저 마련해 주는 게 과연 순서에 맞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사회복지법인은 원래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연 재산이 아까 본인이 낸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설립자의 사적재산이 아니라 공적자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원할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당연히 국고로 귀속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설립자가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돌려주고 정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공성은 일단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최소한 결과를 좀 예측해 보고 사전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교육부에서 말씀하실 때 정원 충족률 말씀하셨잖아요. 50% 미만인 어린이집이

50.9%, 596개소라고 하셨지요. 또 20% 미만인 집도 13.2%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만약에 이 어린이집이 다 폐원을 한다고 쳤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이 지역의 보육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유보통합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아니라 유치원도 같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유보통합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 또 유치원의 통합기관, 통합하는 전환하는 어떤 모델을 만드실 거잖아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그렇지요.

○**백승아 위원**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참 착잡한 현실이지만 그런 모델을 만들 거잖아요. 그때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만드셔야지, 그런 방안이 아직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퇴출할 수 있는 퇴로를 먼저 만드는 게 순서상 맞는가 그런 의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도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은 다 지금 신중검토 의견이에요, 찾아봤더니. 그런데 교육부만 찬성이시거든요. 왜 찬성하시나요? 왜 교육청, 지자체와 교육부의 입장이 다른가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아마 사회복지법인을 가진 그 법인어린이집의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나의 재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승아 위원** 그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에서는 이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는데 교육부는 왜 찬성하셨냐고요. 교육부가 아니라 약간 법인이랑 말하는 기분이 좀 드는데.

○**소위원장 문정복**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지자체나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먼저 해 주는 것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요.

○**백승아 위원** 제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보통합이 되면서 사회복지어린이집의 지원 방향을 만들고 또 말씀한 다른 법안에 있는 추가 보조를 해 주고, 유보통합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과 함께 통합 모델을 만들고 이게 먼저 아닐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거기까지 기다리시기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특히, 다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요 문 단으면 바로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어쨌든 여기 공익법인에 출연을 해 놓다 보니까 재산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출연 재산은 사적 재산이 아니라 공적 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본인의 재산이 묶여 있다고 표현하시는 데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그 사회복지법인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백승아 위원** 아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러면 사립대학 법인들도……

○**백승아 위원** 대학이랑은 또 방향이 좀 다른 게요 대학은 지금 규모나 여러 면에서 사회복지어린이집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법안소위 심사 때도 원칙적으로 경영 위기 대학을 대상으로 한 법이었고요. 또 퇴로 만들어 줘야 된다. 임금도 못 주고 학교 폐교도 안 하고 좀비 대학에 다시 신입생 입학하고, 그러면 결국 모두가 다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빨리 법인 닫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규모나 법인 수나 해산에 따른 영향이나 이게 사립대학이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동일한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개선법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9년부터 거의 십몇 년 동안 이어져 온 법인데 갑자기 이 사회복지법인을 오늘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이 법도 18대부터 계속 여러 법안이 논의는 됐던 역사가 있는 법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백승아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나요?

○**백승아 위원**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출연 재산은 사적 재산이 아니라 공적 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적 재산이 투입된 재산인데 내가 오랫동안 운영했으니 내 것이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백승아 위원님에 이어서 유사한 질문이기도 하고 고민정 위원님하고도 궤를 같이 하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대부터 21대까지 법인 해산에 대한 잔여재산 사적 귀속을 허용하는 내용은 계속 있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 그리고 보조금, 세제혜택에 대한 감독 필요, 그 문구에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이런 이유로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게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한 배경은 알겠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왜 이렇게 잔여재산의 특례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되는지 입장에 대한 것들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사정을 그냥 말씀드렸을 뿐인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에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있는데 제가 21일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보조금을 반환하는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될 텐데, 이전에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논의할 때도 구체적인 사례가 좀 제시가 되어 있기는 했었는데 현재 이런 내용들이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할 그럴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한 제한 범위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인데요.

저희가 117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에 위치하는 것 54.7% 이렇게 해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다시 넣어 드릴게요.

○**강경숙 위원** 구체적인 사례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않은데요 그것도 찾아서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립대학보다는 되게 작아요. 1억 6000만 원 정도이고 4000만 원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10억 100억 되는 사립대학하고는 재정규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저도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과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집과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문정복 위원장께서 하셨던 말씀에, 저도 법안을 냈고 사실 구구절절이 100% 공감하고요. 오늘 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령, 지금 교육부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전부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된 것인데 사회복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만들고 해산할 때는 사회복지법에 적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전부 다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서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운영비·인건비가 100% 지원되는 구조이고 사회복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운영비 같은 게 100% 지원이 안 되지요. 사실은 90% 80% 지원됐다가 대부분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상황과 사회복지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한 상태에서 지원도 계속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원아 모집을 통해 가지고 꾸려 왔었는데 이제는 원아 모집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궁지로 내몰린 그러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다면 아마 우리 논의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적인 열악함과 고통 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영유아 보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담당해 왔던 것을, 여러 가지 종교 시설들이라든지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역할을 많이 담당해 왔었고 지금은 인구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퇴로를 열어 주

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어린이집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법안을 내신 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이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각 교육청도 일부 반대를, 일부 수정이나 신중 검토의견이 지금 교육청마다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이지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방향에 대해서 교육청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구교육청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된 곳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되었던 문제 중에, 여기 교육부에서 의견을 낸 부분 중에서도 현행 우리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또다시 연명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어서 직접적인 어린이집 운영, 여러 타 어린이집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북교육청도 비슷한 의견을 줬네요. 타 기관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그리고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걱정된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빨리 정리될 수 있는 데는 정리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오히려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많은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저도 전체적인 맥락은 다 이해가 되고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그런 걱정은 합니다. 유보통합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될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3페이지 표를 보면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 20% 미만 이렇게 보면 정원 충족이 잘 안 되고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여전히 거기에 어린이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갈 곳이 쉽게 접근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확신이 안 서는 게 사실이고요.

과거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는 아파트 동마다 놀이방이 있어서 출근할 때는 아이 1층에 넣어 놓고 또 올 때 아이 데리고 나오고 이런 식이어서 굉장히 쉬웠는데 요즘은 유치원 숫자 자체가 줄어드니까, 또 아파트 계시판 같은 데 보면 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분들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기의 출근시간과 아이의 유치원 차 타는 시간이 안 맞으면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유치원 숫자, 놀이방 숫자 자체가 줄어든 게 또 학부모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퇴출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갈 수 있는 전체적인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답변하세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1000개가 조금 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기회를 줘서 내가 이 어린이집을 청산하고도 남은 잔여 재산으로 내 개인적인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부다 문을 닫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민전 위원** 물론 전체 숫자는 크지 않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3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어린이집 입지 분포가 있는데요 전체 2만 5000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문제되는 사회복지법인은 4.6%인 1100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다음 고민정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김준혁 위원** 아이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지요? 다들 이 법안에 대한 공감도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바라보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 법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부터 들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또 어제 현재소장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이 죄다 역사 강의 잘 들었다고 다 그 얘기하고 가 가지고 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경세유표 서문에 법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예가 사라지고 나서 법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예의, 사람 간의 소통, 사람 간의 마음 이런 것들이 원래 존재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도 운영되고 국가도 운영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계급이 생기고 또 질서가 생기고 상하관계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의 통제 과정 속에서 법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왜 생긴 것이냐? 또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이지요. 선을 더 중진시키고 악한 것을 더 막고 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여기의 핵심은 원, 원망, 원통 이것을 갖다가 풀어 주는 것이 새로운 법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또 이렇게 다산을 비롯했던 반계 유형원부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역사 강의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들 공감은 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사회복지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단법인 내지는 학교법인도 그만 정리하게 되면 다 국가 귀속이 되는 것인데 예전대로 하자면 국가 귀속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기형적 발전이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다. 1948년에 정부 수립하면서 나라가 돈이 없어서 교육기관을 만들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에게 유치원도 만들게 부탁하고 사립초등학교도 만들게 부탁하고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 전 세계에서 사립학교가 가장 많은 1등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러냐?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형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다가 70년대 산업화 이후에 국가 경제도 발전하면서 국가의 재정으로 공교육기관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기관이 더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립학교가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열악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더 커지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과 다른 이 형태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공적인 도덕적 생각과 또 사적으로는 돈도 별고 싶은 생각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법적인 측면에서 공적인 재산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 이 부분들을 갖다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이건 일종의 원통함, 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퇴로가 아니라 활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다 어른 김장하가 될 수 없다. 어른 김장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범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다 존중되고 또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대부터 왔는데 계속 나오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신중함, 신중함인데 18·19·20·21, 벌써 4대에 걸친 법안에 신중함인데 이제는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하다 보니 되게 강한 것 같네요.

일단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오랜 연수 동안에 해당 법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정권은 바뀌고 장관은 바뀌지만 교육부 직원들은 계속 그대로였을 것 아닙니까? 어떤 준비를 지금까지 해 오셨는가가 궁금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이 법은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됐고요. 작년에……

○고민정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오셨다고 그랬지요? 어떤 논의가 되어 왔었나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보건복지부는 태생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꺼내지를 못했어요,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고민정 위원 아니, 이 법안이 18대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다면서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논의가 됐겠지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그렇지만 논의는 하지 않았어요.

○고민정 위원 한 번도 논의는 안 되고 그냥……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신중 검토로 계속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이런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한 번도 안 됐다고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고민정 위원 맞습니까?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예. 그 부분이……

○고민정 위원 자신 없으신 것 같은데.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일단

은.....

○**고민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복지부에서는 계속 이 내용을 반대해 왔었는데 아마도 다른 사회복지법인 시설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맞아요.

○**고민정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는 어린이집만 빼어져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 한 번도 논의가 안 됐다고 하시니 그러면 복지부가 지금까지는 반대했다는 의견은 논의도 안 됐는데 그러면 누가 유령이.....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신중 검토라는 의견으로 나간 거지요. 저희가 이것을 바꾸자.....

○**고민정 위원** 과장님의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주시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혹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은 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재정 규모도 크게 안 되고 그래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가정이든 실제로 어린이 수가 줄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들은 매한가지일 겁니다. 민간과 국공립은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어린이집의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 그게 선례가 돼서 나머지 어린이집들도 거기에 준하게 적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인만 하고 나머지는 법인 아니니까 다 없던 일로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구에서 받는 어려움들은 민간 가정들의 어려움들이 훨씬 많이 들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물꼬를 트려면 잘 만들어져야 다른 어린이집들에 똑같이 퇴로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잘 끼자, 오늘 저희가 이것 바로 통과시킨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하면 돼서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인 시설들이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꼬를 트면 다른 복지시설들도 법인인 경우에 똑같은 문제 제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복지부에서 이 사안이 논의가 될 겁니다. 어린이집 법인은 그렇게 해결이 됐으니 나머지 법인들도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결국은 예산 문제를 우리가 예단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어린이집과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법인들과의 문제들이 앞으로 닥칠 일이라서, 뭐 이것만 해결되는 거면 당연히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까지 18대부터 쭉 논의가 되어 왔다고 하니 어느 정도

는 가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로드맵으로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이만큼 가면 됩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첫 번째 단추를 끼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반대하고 이런 분들의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저는 일단 그렇거든요. 그런 준비가 좀 되어 계십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잠시만요.

고민정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복지위에서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예,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18대부터 법안은 꾸준히 제출이 됐었고요. 최근 기록을 보면 21대 때도 강기윤 의원안을 비롯해서 5건이 있었는데 강기윤 의원안 중심으로 보건복지소위에서 2023년 9월, 2023년 11월, 소위를 2번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소관일 때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무 부서로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법인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계속하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했어도 진전을 못 본 것뿐이지 논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토론 부탁합니다.

○**백승아 위원** 질문이 있는데 지금 계속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공공어린이집·유치원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재산이 국고 귀속되니까 문을 못 닫는다.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되면 민간·공공 다 문을 닫으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국가적으로 교육부의 정책 대안은 없나요? 문 닫고 가라, 갈 때 재산 조금 떼 줄게 가지고 가라는 것 말고 어떤 대안은 없는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저출생으로 이제 이건 점점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전망이 안 보이니까 다른 걸로 뭘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면 유보 통합 추진되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통합기관 모델 만드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 사회복지어린이집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델을?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기는 한데.....

○**백승아 위원** 유보 통합 추진과 연계해서 구조개선 방안을 교육부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보 통합 밀어붙였잖아요, 교육부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이제 새 정부가 됐으니까 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백승아 위원** 지금까지는 없나요, 개선안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어린이집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과의 관계 이런 걸로 심도 있게 고민은 못 한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심도 있게 고민 안 하셨는데 찬성의견 내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렇게 해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교육부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요건이 만들어졌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직 교육부령 성안 충분히 안 되어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해산할 수 있는지도 지금 어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냥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성안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 것을 해 놓고 찬성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을호 위원** 여기서 논의되면 교육부령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여기 교육부령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정원 충족률이 2년 연속 20% 이하이거나 휴·폐원해서 보육의 지속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 복지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백승아 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그것도 계속 구체적이지 못하다……

○**백승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오늘 이 법안을 의결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에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일독하신다라는 개념으로다가 이 법에 대한 취지 그리고 문제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첫 번째 회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담당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각기 문제점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찾아가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법이 만들어져야지 부령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큰 열개가 있어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사항들을 영으로 정리하는 건데 지금 법이 없는 상태에서 부령을 먼저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잔여 재산 중에서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받은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고 귀속시킨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이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가로부터 받은 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것들은 당연히 귀속시켜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시면 서울시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분의 2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심의 의결과정 중에서 이 법인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기타 채무가 많다거나 그러면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을호 의원님 법안이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쭉 어저께 보니까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법인의 재산은 국가 귀속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법이 만들어진 시점을 저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때는 대한민

국이 정말 산업화시대, 근대화시대로 막 뛰어 올라가는 시대였고 그 시대에 맞춰진 사회복지사업법이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하고, 아까 김준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그 법에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는 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충원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문 닫으라고 해도 폐원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다만 50%가 넘는 농어촌에 있는 정말 충원율이 20% 미만인 이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가 이런 관련 법률을, 타 법이 그것을 제약하고 있지만 저희 교육위에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면 저는 퇴로를 열어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일독을 하시고 나서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한 번 더 진지하게 토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기타 관련된 단체나 그리고 교육부 과장님은 개인의 재산을 먼저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요. 상황에 따른 우리의 모멘텀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계속 심사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봄 주십시오.

김문수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은 현행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규칙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견이 없고,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부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것은 7항까지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성국 의원님이 내신 안은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치원장이라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에서 동일한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원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35조를 보시면 17조 1항과 17조의3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두 가지 이상이 같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은 단서로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을 규정을 하면서 어느 규정인지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7조 1항에 따른 건강검진’이라고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이 오셨는데 오늘 소위지만 차관께서 처음 출석하신 거라서 잠깐 인사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좋은 법안을 통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방금 오셨으면 실장님의 이것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및 7항 두 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회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에서 2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사립학교의 적립금 관리와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시면, 오른쪽 내용입니다. 2017년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근거와 외부전문가 1인의 의무적 참여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심의회는 308개가 설치되었고 이 중 236개가 외부전문가 1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운용은 이 개정안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비율이 증가될 경우에 기금운용 수익 제고와 현재 다수의 기금운용심의회가 외부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사립대학적립금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심의 강화 등의 관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단 자료를 보시면 참고로 현재 교비회계 기준으로 23년 61개 중 39개가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법인회계 기준에서는 9개 중에서 6개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사립대학 의견과 부칙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립대학에서는 기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기금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보시면 사립대학들의 금융상품 투자현황이 있는데요 참고 1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부칙 사항입니다.

8페이지 내용은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 시행 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가 현재 2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립대학 회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정이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방에서는 선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러던데 그렇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무래도 수도권의 전문가를 구하기 쉬운 지역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기금 규모가 작은 대학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만약에 기금이 큰 데는 외부전문가 2명이 들어와야 되지만 기금이 아주 작은 데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전문가 2명 이상이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문정복** 1명만 둬도 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최소한 2명이면 되는데……

○**소위원장 문정복** 최소한 2명이면 2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혹시라도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있을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기금 규모가 작아도 그냥 외부전문가 2명을 해야 된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일단 투명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무 조항이거든요. 뭐뭐 해야 한다던데 이것 강제할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규모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정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강제를 하거나 혹은 지원하거나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금운용심의회는 회계사나 이런 전문가가 상근으로 근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회의 있을 때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 보고 현황을 보고 혹시 또 필요하면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법을 개정하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만들 때 가장 적합한 안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일이어서 만약에 그런 약간의 융통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지 교육부가 ‘이건 아닙니다’ 이러고 일도 양단 딱 해 버리면 저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전문위원님, 혹시 추가로 주실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지방에서 운영위원회 전문가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 짐 때문에 시행령상에 외부 전문가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렇게 연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이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하는 방법, 시행령 규정에서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지방의 구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여기 자격요건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런 것들을 연한을 조금 낮춰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만약에 부처에서 판단을 해 보시고 구인난이, 인력풀이 너무 없다 싶으시면 시행령상의 이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실무적으로 봤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법안은 그대로 넘기고, 한번 해 보시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으면 구인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교육부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입니다,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사립대학에서 기금운용과 관련된 전문가 2명을 위촉을 못 한다면 그 대학은 폐교돼야지요. 교육부가 이런 정도까지 너무 깊이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교육부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잠깐 쉬시다가 차관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바로 계시다가 차관이 되신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퇴직하고 2년 됐습니다.

○**김준혁 위원** 2년 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질의 다 하셨지요?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이홍복** 위원장님, 담당 과장인데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이홍복**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전문가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화상이나 영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학교시설의 경우에 건축 시 통보만으로 건축허가를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학교시설 건축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통보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학교시설 건축 관련해서 현행법 체계를 보면 학교시설 촉진법에서는 감독청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면 건축신고나 협의가 있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1항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법에서 특례를 두어서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하단에 관계 부처 의견을 보시면, 교육부에서는 절차 간소화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육부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다음에 김준혁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고민정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나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교육시설과장 최문태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159개 학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전체의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학교가 1만 개가 좀 넘으니까 그 중에서 159개면……

○**고민정 위원** 11% 정도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제가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경남의 자은초등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급식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허가 없이 했다, 경남교육청이 허가해 준 내용이었기 때문에 했던 건데 당시 창원시가 못하게 하고 과징금 1억 2000만 원을 이렇게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급식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저는 이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공공서비스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국토부의 어떤 지자체 승인 없이 못 짓게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의무를 서로 이행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육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불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국토부하고 이 내용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학교시설 사업 자체가 공공 영역이긴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그 지점을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1차 저희가 실무 협의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담당 과장입니다.

관련해서 국토부 담당과 통화도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쪽 의견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런 허가와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타 관련한 법령에서 좀 풀어 달라는 요구

가 굉장히 많답니다. 저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말고 개별법으로 풀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는 사항으로.

저희도 개발제한구역법에 보게 되면 학교 같은 경우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루어진 학교에서 추가적인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여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다른 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걸 허가를 받고 해라.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서도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게 아니다. 불허가 아니니까 허가받고 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개별법에서 또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저희가 그린벨트 내 학교 증축 간소화법을 통과시키면 그거는 국토부는 그대로 용인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아닙니다. 수용이 계속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용은 곤란하다고?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법사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법사위에 국토부가 출석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리면 개발제한구역 내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데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사례는 왜 그러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까,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허가를 받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허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받지 못한 거지요?

○김준혁 위원 아니, 그건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서지영 위원 조금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제 얘기 듣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일에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라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하면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재?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위원님,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증축된 학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7월 1일 이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서만 추가 증축하

는 경우에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지영 위원 왜 2000년 7월 1일로 규정한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법을 보게 되면, 아마 옛날에는 학교가 시골이나 그런 부분에 급하게 짓다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학교가 지어진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증축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제한적으로 기한을 두고 그 이전 것만 허가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여기서 저희가 조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법이 공공의 목적으로 특히 저희가 교육위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허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법안에서 2000년 7월 1일로 그 시점을 규정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준혁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왜 그 사례에서는 허가를 신청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왜 그 허가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좀 면밀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것도 우리 교육위에서 국토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서지영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고 또 합리적 내용으로 말씀을 잘 해 주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 증축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그런 공간 안에서는 일부 증축이 지자체 허가 없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교육청도 자은초등학교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냥 증축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래서 건물도 다 짓고 그리고 다 진행을 하다가 뒤늦게 창원시청에서 건물 사용중지와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과징금을 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은초등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급식시설은 폐쇄하고 건물은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2000만 원만 예비비로 경남교육청이 과징금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의 증축 허가 신청을 다시 지자체에 냈지요. 냈는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이후에 지었던 건물인데 급식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2000년 이후에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가를 안 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요.

왜? 2000년 이전은 가능하고 2000년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제안을 하면 법사위에 와서 국토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법사위 안에서 저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하게 됐을 때, 그래서 법사위 가서 한번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고민정 위원** 저 확인하고 싶은데요, 교육부에. 아까는 허가를 받으면 지을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생겨난 학교는 그 조항에서 적용을 안 받는다, 그 사실을 국토부는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법 조항이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지어진 학교는 허가를 받든 말든 무조건 안 된다고 현재는 그렇다는 거지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법 조항상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거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사실은 이거는 교육권에 대한 대단한 침해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이미 그린벨트건 아니면 그린벨트가 아니든 간에 학교라는 공공의 시설이 들어왔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증축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저희가 3층짜리 학교에다가 50층을 짓겠습니까, 60층을 짓겠습니까? 해 봤자 급식실 그다음에 한 층 정도 교실 추가 이 정도의 증축인데 이것조차도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교육부 있으나 마나 한 거지요.

그러니 법사위에 가서 국토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교육부가 국토부도 좀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이거는 저희 교육위에서 통과를 안 하면 업무 해태인 것 같습니다.

부칙에서 자구 수정,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이 개정안을 통과하는 경우에 부칙의 단어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실 것인지 유예를 두실 것인지,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단히 수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저희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적인 목표를 가장 최상위에 두는 건 맞지만 사실은 국토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교육으로 시야를 한정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건의료라든가 아니면 국방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통과되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다른 시설에 대한 허용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가 왜 2000년 7월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나중에 법사위에도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2000년 7월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지금 시점으로 하면 25년 상한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왜냐하면 과밀학급인 경우에도 증축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생겨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부는 국토부를 설득하는 그 대안을 조금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저희가 심사보고서에 서지영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넣고 국토부를 좀 잘 설득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자고요.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너무 빠릅니까?

○**고민정 위원** 안 빠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안 빠르지요?

○**고민정 위원** 뒤에 이제 복잡한 법들이 많기 때문에.

○**서지영 위원** 몇 시까지 하실 건지 대략적인, 예측 가능하게.

○**김준혁 위원** 8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문정복** 이거 몇 개 안 남았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재해유족급여의 수급 대상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이미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군인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에서도 자녀·손자녀의 수급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상향이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상 맞춰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문상 2페이지 왼쪽 편에 보시면 그 수급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은 직접 규정하고 있고 25세가 되었을 때 상실한다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40조 4호를 준용하고 있어서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페이지 보시면 지금 개정안의 내용대로 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손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가 있는 이 제한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부가 수정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25세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용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의미는 시행 당시에 19세가 안 돼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지급을 하는데 19세를 넘어서 시행 당

시에는 유족연금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25세 미만이더라도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적용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소급적용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그렇습니다. 일단 시행 당시에 19세 미만인 사람한테만 적용을 하고……

○**소위원장 문정복** 새롭게 제정된 날부터 해당되는 사람부터만?

○**전문위원 윤상열**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렇습니다. 소급적용하게 되면 너무 재정적 부담이 커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본적인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의견을 담아야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교육부 수정의견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에서 25세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혜택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대로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전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50%잖아요, 20살에서 24살이. 그러면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적용 대상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입니다.

일단 연령 조항만 조건에 부합이 되면 해당은 됩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하고 있어도 해당이 된다 이것이지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 되셨습니까?

○**김민전 위원** 예.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일정 11항이 똑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기 때문에 11항까지 논의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봐 주시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연금법상의 압류금지조항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지만 위헌 의견이 5명이었고요. 양육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5명이 판단을 했고요. 합헌 의견을 낸 4명의 경우에도 위헌은 아니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5년 7월 10일 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의결을 했고요, 오늘 지금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서 연금 수급권의 2분의 1 이상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채권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5페이지 보시면 적용례를 여기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도 행안위에서 의결한 적용례와 같이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시행일만 있고 적용례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행안위에서 의결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데 시행일 현재 자녀가 성년자가 돼서 양육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채권이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적용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일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연금 법이 법사위에서 오늘 의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전문위원 윤상열** 예, 지금 심사 중이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심사 중이고요?

○**전문위원 윤상열** 예, 그리고 저희는 지금 행안위에서 의결한 내용이랑 맞춰서 의결을 하면 변동 사항이 있더라도 이게 동일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아마 저희 법안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을 해서 의결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의결을 하면 이후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같이 의결할게요.

하나만 물어봐요.

그려면 2분의 1 이상 압류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전문위원 윤상열** 예.

○**소위원장 문정복** 만약에 이게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상열** 어떤 문제……

○**소위원장 문정복** 공무원연금법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법사위가 이 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잖아요.

○전문위원 윤상열 예.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법사위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것도 이것도 다시 회귀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아니, 일단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특별히 그런 사항은……

○소위원장 문정복 별 이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오케이,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 및 1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2항부터 18항까지 7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금 교육지원청과 관련된 4개의 사항입니다. 4개가 서로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설치원칙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하단 박스를 보시면 현재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개를 관할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228개 중에서 37개가 복수의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 4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만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4항에서 조직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시도 조례로 하는 내용이고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역시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실현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조례로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하단 박스에 있는 수정의견 내용입니다.

자료 7페이지는 교육부에서 낸 의견이 상세하게 지금 서술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10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내용, 세 번째 개정사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교육감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용태 의원안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역시 지방자치단체 설치, 폐지 등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현행 내용을 보시면, 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행은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통합에 대해서만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인데 현재는 교육감이 설치·폐지·통합·분리를 모두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사항은 교육장의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현행은 지도·감독만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해서 ‘지원’이라는 내용을 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이견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내용이 총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16페이지 내용으로 34조에서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설치 2항·3항·4항을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안의 내용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이 교육감의 교육지원청 설치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시·군·구 1지역이라든지 그것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명칭과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이 법안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이 보입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방만한, 조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 체계상으로도 시도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으로 나뉘져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몇 개 구를 포괄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단일 구에 있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구 형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조직이 형성된 데는 다 자연스러운 배경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부산시 동래구인데 저희는 동래교육지원청이 연제구와 금정구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3개 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다 동래구였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학군이고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래교육지원청이 3개 구를 포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 개 구를 포괄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부담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봄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소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에도 보면 선거구만 해도 복합선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역마다 인구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인구구조도 다르고 학령인구가 과밀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굉장히 과소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1개 구에 1지원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사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는 행정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감당이 가능한 정도인지에 대한 선행적인 분석 이후에 저는 이 법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지금 굉장히 이것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안을 내신 분들의 의미는 다 있지만 제가 볼 때,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이 보면 보통 2국 6과로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국이 2개 과가 6개. 그다음에 국이 없이 과만 4개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또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보면 교육장 밑에 과장만 두 명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대부분 다 보면 2국 6과입니다. 국이 2개 과가 6개나 있지만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강원도라 하니까 백승아 위원님 쳐다보는 눈빛이 더 좀 강렬한데 과장, 그러니까 강원도는 대체로 그렇지요. 대체로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규모가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규율을 정해 버리면, 지금 여기에서 과가 하나 늘어나는 게 얼마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국의 차이와 과의 차이 그리고 과의 숫자의 차이가 직원의 숫자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데 이것을 관할구역 자체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버린다, 저는 상당히 이것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는 법이라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육감이지요. 교육감이 자기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파악도 못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

치하고 폐지하고 통합·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예를 보여 드렸지만 지역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이 교육지원청을 하나의 굴레로 씌워서 그거를 이렇게 묶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두 분 위원님 발언을 하시는 과정에 약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현행 법률이 한 시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에 무조건 하나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만 교육감이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개 시에 하나의 교육청을 만들라고 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정성국 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정성호 의원 법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예, 법안이 7개나 있기 때문에.

○**김준혁 위원** 정성호 의원 법안하고 송옥주 의원 법안, 두 법안이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전혀 아니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지금 교육부가 의견을 줬는데, 4페이지에 교육부 신중 검토 의견 내신 안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의 설폐에 관한 것을 교육감에게 이관을 하고 이관을 하게 되면 교육감께서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3쪽에 나와 있는 정성호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이준석 의원님처럼 1개 시·군·구에 1개를 둬라라는 원칙에는 저희도 신중 입장이고요. 그래서 교육감들이 정하도록 하는데 정할 때 1개를 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16페이지 좀 잠깐만 보세요.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현행과 같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행과 같이 교육지원청을 1개에서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게 변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고민정 위원** 아니에요. 앞엣것은……

○**소위원장 문정복**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정부 수정 사항 반영한 거 16페이지 보세요, 34조.

○**고민정 위원** 그런데 앞의 3페이지 4페이지 설명으로는 ‘1개의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법률로써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안이 지금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가 낸 최종안은 34조는 ‘(현행과 같음)’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그러니까 현행이 1개 또는 2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1개 관할, 2개 관할, 3개 관할 다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현재처럼 놔두는데 그러면 교육감님들께서 할 때 1개를 둘 수도 있고 2개를 합쳐서 둘 수도 있고를 교육감님……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감에게 그냥 이관하는 거지 이것을 시마다 1개의 교육청을 둔다라고 못 박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현행이 1개로 못 박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현행으로 놔두고 교육감께 이관을 하면……

○**소위원장 문정복**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이 판단할 일이 아닌지, 저희가 법에서 무조건 한 시·군마다 1개씩 교육청을 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닙니다. 현행도 아니고……

○**소위원장 문정복**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누가 맞아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면 하나 또는 2개 이상을 둘 수 있고 지금 저희 교육부 의견도 현행처럼 하나 또는 2개 이상을 그대로 두고 다만 이제 그것을 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맞습니다, 그거예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질문하세요,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현행 체계에서는 설치하거나 통합하거나 폐지·분리는 그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교육자치협력과장입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지금 법률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명칭하고 위치, 관할 이것을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 또는 협의로는 교육부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상당히 인정을 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지자체장이 각 산하의 행정기관을 통합·설치·변경·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그렇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도 그럴진대 교육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도 그렇지요. 1개의 교육청이 여러 구를 관할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1개 구에서 1개의 교육지원청이 생기기를 원하는 요구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 주고 싶을 겁니다, 교육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교육행정 하는 데 있어서도 재원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데요. 그것을 과연 어디에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교육감 스스로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모두 다 정하는 거는,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행정 체계에 대한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 취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조직이라든지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각 교육청에서 인구구조까지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연구가 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까라는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잠깐 조금 다들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는 34조 1항에 1개 혹은 2개의 자치구를 교육지원청 하나가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든 하나에 하나가 있고 어떤 데는 2개의 자치구를 하나의 지원청이 하는 게 현행이고요. 정성호·송옥주 안은 1개 자치구에 1개 교육지원청을 둔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예외 조항으로 2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달라졌지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안은 1개 자치구에 1개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시기 한데 아까 서지영 위원님이나 정성국 위원님이 반대하셨던 1개 자치구에 1개 지원청을 둔다고 의원들 법안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맞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소위원장 문정복**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이……

○**고민정 위원** 정부는 현행 유지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현행 유지로 하고 거기에 대한 통폐합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하고,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화성 인구가 110만이 넘었어요. 오산 인구가 30만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을 화성·오산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법안을 내신 분들 보면요 전부 대도시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행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과소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는 사실 교육청이 1개 시군에 하나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복수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을 해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법률안이고 이것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인구 110만하고 30만이 넘는 도시가 교육청을 하나를 쓰고 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민정 위원** 잠깐 제가 질의를 마저 다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은 하나의 지원청으로 감당이 불가능하니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지요?

○**강경숙 위원** 화성과 오산 각각.

○**고민정 위원** 각각, 화성과 오산이 지금 하나로 하고 있으니 최소한 이거는 하나하나씩 하자.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지요.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데들은 인구가 또 너무 적어서 여기를 또 각각 두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이시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각각 의원들의 안과 교육부의 의견은 어쨌든 지금 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정리하고 싶어 말씀드렸고.

저의 의견을 내면 현재는 인구가 늘어나기 전에는 하나의 자치구 안에 하나의 지원청이 있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이제 분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2개의 자치구가 1개의 지원청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혹은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자치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를 들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성동구였는데 광진구가 분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동·광진을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동구는 성동구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과 목표들이 있고 또 광진구는 광진구 나름대로의 것이 있는데 이게 2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현장에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이나 이런 곳들은 훨씬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무 자르듯이 1개 자치구에 1개, 2개 자치구에 1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인구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교육특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교육지원청은 현행 유지를만 계속 갈 겁니다, 현행을 건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왜?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히 안 만들고 싶지요. 왜냐하면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계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인구가 많아져서 문제 혹은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져 가지고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정리해서 그냥 후다닥 정리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는 않고, 다만 현장의 문제점들이 현재 발견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다시 조정을 해 볼까는 교육부가 고민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문정복** 교육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교육자치협력과장입니다.

8개 교육청에서 의견을 줬는데 8개 교육청 모두 교육감에게 이런 권한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마지막으로 된 게 2003년입니다. 그때 안산시교육청이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분리된 게 마지막이고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분리 신설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

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을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 있고요. 또 반대로 인구가 좀 없어지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통합에 대한 그런 수요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후죽순처럼 교육지원청이 분리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통제 장치가 있느냐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원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수는 몇 명 정도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은 몇 명 정도 해서 그런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다가 기준 단가를 곱해서 총액인건비를 저희가 산정해서 부여하는데 가급적이면 시도교육청에서 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이 총액인건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인력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육지원청을 많이 신설할 경우에 그런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총액인건비라는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설하는데도 굉장히 신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니 그것은 충분히 교육부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맞습니다. 기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법이 다른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에 필요한 법입니다. 뭐냐 하면 구리하고 남양주가 지금 같은 교육청을 써요. 남양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양주와 동두천이 같은 교육청을 써요. 화성·오산 그렇고요. 저희 시흥하고 안산이 2000년도에 분리된 건데 지금 안산 인구가 60만이고 시흥 인구가 60만이거든요, 2만 빠지는 60만이거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기도의 수요에 의거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경기도민들의 불편함이 너무도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법이고요.

다만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는 교육감님들이 이것을 분리를, 이것은 분리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얼른 유효적절하게 개정을 해 줘야만 국민들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굳이 굉장히 절차적 하자나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넘겨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거듭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선행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개 구를 포괄하고 있어서 다 합치면 인구는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학령인구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공무원 수에 대한 제안을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시설투자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원청이 분리되면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제반비용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들께 권한 드리는 것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근본 취지에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지사들이 자기 지역의 행정 통폐합 이거 마음대로 못 합니다. 못 하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와 민의가 있을 때 일부 조정이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의 인구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법령을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 지역의 굉장히 인구 폭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학령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기민하게 대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당연히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수반되는 여러 파급효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통해 가지고 법안 개정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혁 위원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문화원, 교육부하고도 관련이 돼 있긴 합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구의 문화원하고 또 부산에 있는 구의 문화원, 한 지자체마다 문화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20만도 문화원 하나, 3만 5000명 군도 문화원 하나, 수원은 127만인데 문화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인구, 학교 현황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의 위상과 역할 혹은 숫자도 달라질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의 특별한 상황들 정말 심각하지요, 교육적 문제에서. 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고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급하기는 하시지만 이 문제를 교육부가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이것을 인구 숫자, 지자체별로 무조건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 현황, 가령 초등학교가 몇 개 이상, 중등학교 몇 개 이상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교육지원청을 나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대안은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법안소위가 만약 진행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논의는 거치겠지만 이 안을 다시 이야기해서 풀어내시는 것이 서로 좀 좋지 않을까, 급하더라도 조금 한번만 더 신중하게 가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저는 사실은 이 법안 하면서 반대 의견이 나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행법을 제치고 딱 시군구마다 하나 가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넘겨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분리 설치하는 것을 위임하는 건데 이게 왜 더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김민전 위원님, 국민의힘의 김용태 위원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김민전 위원 김용태 의원님 지역구도 제가 가 봐서 알고 있고요. 지금 화성 동탄의

문제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울 지역들도 초등학교 숫자 중학교 숫자, 제가 있는 지역 근처의 중학교도 하나 또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학생들이 줄어드는 걸 생각해 보면 소위 관료와 지원청만 늘리는 게 능사인가 하는 문제의식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준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학생 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인구수가 많으면 학생 수도 많지요.

○김민전 위원 그게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것은 꼭 비례합니다.

○김민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가 좀 더 스터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니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다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연달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말씀하십시오.

○김민전 위원 지금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서지영 의원 발의한 안과 또 제가 발의한 안도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게 같이 병합이 안 됐나요?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이어서, 관련 사항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어서 오늘 같이 병합심사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되셨습니까?

○서지영 위원 조금 훌딩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조정훈 의원 법안을 조금 나중에 정리할까요?

별써 2시간이 넘었어요.

잠깐만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전 위원 언제까지 하시는데요?

○소위원장 문정복 조금만 더 하시지요.

○김준혁 위원 나는 원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8시까지 한다고 그래서 다 취소해 버렸는데요.

○소위원장 문정복 6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6시까지 안 잘 것 같은데요.

○정성국 위원 잠깐 쉬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 정회를 하고 30분에 다시 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관님, 오랜만에 복귀하시니까 어때요?

오늘 법사위에서 교육위 법안 잘 다 넘어갔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문정복 다 무리 없이 넘어갔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어제 그 법안 빼고요. 무상교육 관련된 그것만, 그건 안 올라왔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의사일정 20항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표의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공표를 해야 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실태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실태조사 후에 오류 검증, 심층 분석, 예방 대책 수립 등에 최소한 필요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30일은 너무 짧고 좀 길게 150일 이내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간단하게, 30일이 아니라 150일 이내라고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고 교육부도 그렇게 수용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150일 이내가 적절합니까?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30일 이내로, 그 부분이 빠르다 느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무려 272일 정도 걸리고 많게는 345일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정을호 위원 이 부분도 이렇게 느리면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고 그런 부

분들 어떻게 해결할까가 중요한 거지. 저는 30일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행정적으로 이게 힘들 것 같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30일은 무조건 가야 된다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게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같은 통계자료는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류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관련 정책하고 저희가 검토하는 게 필요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실에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50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왜 150일이에요?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런데 왜 150일이에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6개월로 넉넉하게 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 기간을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장 박혜원** 사실 필요한 최소 기간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이게 학생 신고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지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학생 신고 기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 신고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접수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아이들 예방과 학교폭력 인식에 대한 질문들을 담아서, 일반적인 승인통계 조사들을 보시면 아실 텐데 최소 사오개월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저희가 기본 통계라든가 각종 다른 통계조사를 할 때도 오류 검증하고 실태분석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하다 보니까 150일, 5개월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이것을 너무 길지 않고 그럼에도 오류를 내지 않을 그 적정선을 찾은 부분이고요.

의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분석 완료 후 30일 이내라는 입법취지라고, 저희 쪽 의견에도 다른 기관들하고 승인통계 비교해도 저희가 특별히 길게 잡은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 설명드립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가 각각의 학기 시작 전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학기가 3월 달에 시작하면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면 그전에 해야 되면 그 150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장 박혜원** 그게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전에 나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학기 조사한 것은 2월 정도에……

○**정을호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장 박혜원** 예, 그 기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설계를 한 겁니다.

○**정을호 위원** 한 달 전에 하게끔 돼 있어요?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장 박혜원** 예.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발의하신 김문수 의원실하고는 충분히 논의가 된 거고요?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장 박혜원** 예.

○**서지영 위원** 저 질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그러면 6개월 단위로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시 기간은 한 달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실시하고 5개월 뒤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다음 2차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걸 발표하시게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장 박혜원**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정리해서 9월 18일 정도에 2차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초 정도에 보통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정보공시에 그 자료들을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부 수정의견을 보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시기는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두 번 실시하니까 6개월마다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장 박혜원** 예.

○**서지영 위원** 그리고 실시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고, 실시가 끝나고 나서 교육부에서 수정의견 주신 것은 5개월 뒤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5개월 뒤에 결과를 발표할 때 2차 조사가 시작될 때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차 조사가 시작될 때 그 시점에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실태조사가 발표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2차 조사가 실시될 때 2차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맨날 똑같이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조사 내용에 대한 변화라든지 추가한다든지 변경된다는 부분이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월이라는 시간을 잡아 놓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큰 효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개월보다는 적어도 2차 조사 실시 전 한 달 정도의 기간은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사를 이행하고 다음 조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했던 발표 시기를 보니까 90일에서 240일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 발표했던 시점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사의 방식이 온라인조사 방식이잖아요. 무슨 대면조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것 거의 정량조사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사 분석이 5개월씩이나 걸린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조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장 박혜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조사들도 거의 다 온라인조사 방식인 것도 많지만 전수조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기간 부분 문제가 있고요. 아까 한 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8월 또는 9월 초 정도로 주로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

○**서지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 얘기하는 게 8월, 9월이 아니라니깐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자, 보십시오.

1년에 두 번 하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를 할 때 조사 기간이 한 달이라고요. 그러면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5개월 뒤에 발표를 하니 2차 조사가 시작될 때 발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음 조사에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기에는 5개월의 기간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다음 조사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사실은 기한을 정해 놓으면 누구나 5개월에 맞춰서 발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발전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1차 조사 이후에 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장 박혜원** 지금 사실 2차 조사 문항도 1차 조사 문항처럼 이미 좀 세팅이 되어 있어서 1차 조사 결과를 가지고 2차 조사 문항을 갑자기 바꾸거나 이런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1·2차를 종합적으로 보고 학기 시작할 때 예방교육을 함께 하는 의미로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위원님 지적도 2차 하기 전에 좀 더 시차를 두고 이게 되어야 한다, 지금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의견을 주신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조금 넉넉잡아서 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또 여러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승인통계에 미루어서 맞춘 부분은 있는데요 말씀하신 시차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강경숙 위원** 2쪽을 보시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조사 후 공표까지 약 5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교육기본통계는 또 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지영 위원님 말씀도 이게 굉장히 뒷받침이 되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솔직히 저도 학교 현장에 좀 있어 봤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그러면 실태조사 자체가 기계적으로 조사하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 법명도 그런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러기에 또 앞서서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대강으로 심지어 법적분쟁까지 붙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나 인간사 다반사인데 애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뭔가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교육의 어떤 모티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무슨 위기 대처라든지. 그렇게 길러 가지 않고 이렇게 딱 주어질 때는 교사가 이것을 폭력으로 신고할까요 말까요, 교사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회복이니 숙려니 이런 용어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진짜 공감이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뭔가 교육의 현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대책들이 사실 시급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서지영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4개월 정도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마침 교육기본통계도 그러하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이런 게 몇 개월 만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규정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아마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은 빨리빨리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으면 좀 빨리 제대로 발표하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하자 이런 문제의식으로 법안이 나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9월 초에 발표하고 9월 중간에 조사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한 것의 영향이 9월 중순에 하는 그 조사에 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조사하니까 혹은 우리 시에서 조사하니까 성폭력이 되게 많더라’ 이러면 성폭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또 응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면 2차 조사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시각·프레임이 적정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 주셨어요. 정을호 위원님은 기존 원안처럼 30일 내에 하자.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은 4개월 정도 하자. 맞지요, 서지영 위원님? 맞나요?

○**서지영 위원** 저는 5개월은 너무 과도하다. 기간은 좀 합리적으로 다시 교육부에서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120일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해 갖고 오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계속심사할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50일보다는 4개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용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담당 과장님 의견 들어보니까 좀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4개월에.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4개월로 수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교육부가 4개월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가시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문구는 120일 이내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120일 이내로?

○**전문위원 윤상열** 예.

○**소위원장 문정복**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전공대학 교원을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31조의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상훈법이 서로 연관된 내용인데요. 현행 상훈법상의 근정훈장 수여 대상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여기에 더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 4항에 따른 전공대학은 그 교원의 경우에 근정훈장 수여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 그 전공대학의 현황은 하단 박스에 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근거한 내용으로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 기술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이 때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 가능하고 현재 현황을 보시면 3개의 대학에 대해서 총 222명의 교원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그 전공대학 교원에 대해서도 상훈법상의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견이 없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관련 단체에서 이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구별되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전공대학 교수들의 포상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공대학 교수들도 사립학교교직원 어떤 법에 의해서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현재 포함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준혁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사학연금 대상에 포함되는데 왜 여태까지 이게 안 됐는지 그게 거꾸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 이전에 고등기술학교로 있을 때는 상훈법의 대상이었는데요 2008년에 법이 바뀌면서 이걸 전공대학으로 바꿔 주면서 법의 미비점이 있었던 겁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2항부터 26항까지 5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5건의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내용은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회가 9명 추천, 대통령이 5명 추천, 교육부차관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감 협의체, 교원단체 이런 식으로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개정안들의 내용은 국회하고 대통령 추천 뒷을 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차관은 위원에서 제외를 하고 교육 전문가 및 관련자들 포션을 좀 늘리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특정 직군에 과도하게 편중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를 선발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 등을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8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항상 이런 입법례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위원이 변동되는 때에 규정을 하는 식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적합한 적용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다음 내용은 위원장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한 행정위원회의 사례들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하셔서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 보시면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국회법하고 인사청문회법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의결을 한다면 그 일정에 따라 운영위에도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적용례도 마찬가지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물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까지 포함해서 3개 법이 다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뽑는 위원장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16페이지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대통령령에 위임이 돼 있어서 대통령령에서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 경우에만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2024년에도 요청 건수 5건인데 충족을 하지 못했고 2025년도에도 요청은 7건이 있었는데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만 명 이상 5만 명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의결정족수 강화와 관련해서 현행은 전부 의결 요건이 재적위원 과반 출석 재적위원 과반 찬성 이렇게 돼 있는데, 고민정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그리고 김영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소관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을 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행정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면 3분의 2까지 가중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거는 백승아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회의의 비공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비공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영규칙으로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가 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법에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비공개 사유를 제한을 함으로써 공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고민정 의원안의 내용은 회의 방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방청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방청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안, 백승아 의원안에서 회의록 작성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현재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속기록은 아니고 회의 내용을 그냥 정리한 형태고 발언자의 성명이나 이런 거는 익명 처리로 돼 있고 그리고 참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에서는 속기록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공개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안에서는 일단 회의록을 속기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백승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공개하고 그다음에 녹음기록까지 하도록 그렇게 강화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배심제를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김영호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현행 국민참여위원회를 배심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도 배심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면서 배심위원회의 권한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안건은 일단 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위원회 의견도 듣도록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심위원회는 전문위원회가 검토 결과를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수결로 의결을 해서 교육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부결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배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배심위원회에서 재논의한 경우에 다시 또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내서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로 의견에 대해서 다시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개정 내용이 많습니다만 저희 교육부에서는 일단 국교위와 교육부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교육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만 조금 신중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입니까? 다 하신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문정복** 국교위 의견 내 주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정대화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목차의 4번, 국민 의견 수렴·조정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하고……

○**소위원장 문정복**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16쪽입니다.

이 안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1만 내지 5만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하되 이것은 본법에 넣기보다 시행령으로 해서 하는 것이 운영상 더 유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쪽의 백승아 의원님이 제안하신 회의 비공개 요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비공개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국교위법에서는 좀 소략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22쪽에 보시면 왼쪽에 참고사항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 운영규칙의 1호·2호·3호·4호가 대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비공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국교위의 재량이라고 말씀하셔서 5호는 삭제하고 1호·2호·3호는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호는 이게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어서 이것 전부를 다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감사라든지 감독·검사·규제·계약·인사관리 등등 이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위원회가 비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작성, 29쪽 8항입니다.

회의록 작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백승아 의원님 법안에서 회의 후 보름 이내에,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오늘 회의를 하면 다음 달 회의록을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 동안은 회의록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찾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 하고 다음 회의 때 확정한 다음에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 주시면, 그러니까 차기 회의 후 일주일 이내 7일 이내 이렇게 해 주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저희 국교위 본회의 외에 국민참여위원회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국교위 본회의는 속기사가 들어오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팀이 들어오는데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국참위원회는 속기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그걸 풀거나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스템이고, 특히 특별위원회는 7개 내지 10개를 가동하는데요 이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열리고 사실 작업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대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와 관련된 모든 요지를 다 작성을 하되 회의록 아닌 방식으로 작성할 필요로 해주시면 그러면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그러니까 이것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차기 회의 후 일주일 내에 공개하되 그것이 회의록이 아니고 이를테면 참석자라든지 발표문이라든지 결정 사항을 다 공개하되 회의의 요지로 발표하도록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업무에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회의록 아닌 방식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예. 회의 요지록.....

○**소위원장 문정복** 회의 요지록?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예. 저희가 지금도 회의 요지를 작성하는데 다만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고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회의한 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최근 저희 내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회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 원래 국회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참여배심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제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34쪽 이하입니다,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심 업무 중심으로 정리가 되면서 국민참여위원회의 기존 업무가 살짝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대목이 15조에서 짹 빠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되 그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부결된 안건을 재논의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국민참여위원회 또는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업무가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기존 업무 더하기 이 배심 업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심, 그러니까 국민참여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한분이 맡고 있고, 지금 김태준 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좀 많아서 이게

비상임위원이 맡을 경우에 업무의 연계라든가 연속성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해 봤습니다. 상임위원이 맡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장을 맡는 분이 약간 상근하든지 아니면 상근을 못 하면 상근 전문인력이 이것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500명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상임위원 중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적절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어떻든 이게 약간은 상근 체제가 되어야 배심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또 하나 제가 추가할 것은 국민참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이 본 법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담아 주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 법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뚱뚱그려서 각자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2번, 위원회 구성 변경 이 챕터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이어 가면서 정리해 가면서 일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 구성 변경과 관련해서 세 분의 의원님의 안이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 변경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정성국 위원 정대화 상임위원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예.

○정성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공감하는 내용도 많고요. 제가 또 1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국교위 안을 어떤 분들이 의논을 하셨습니까, 지금 주신 의견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개정안 중에서요?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지금 정대화 상임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은 2번이 아니라 4번부터거든요.

○정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운영의 편리상 2번 위원회 구성안부터 먼저 정리해 가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정성국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하신 설명한 내용이 어떤 분들이 의논한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거든요. 지금 답을 하시려는데 답을 하시면 되는데, 큰 문제도 아닌데 왜 그래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그래요.

○정성국 위원 국교위에 대한 지금 정대화 위원님의 의견을 발표했잖아요. 했는데 방금 발표한 내용들이 어떤 분들이……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면 안 될까요?

○정성국 위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논의했는지, 논의의 장에 참여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그것만 하고 2번부터 가시지요.

○정성국 위원 그러면 됩니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답변해 주세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 안 중에서 공통 부분이 많아서 같이 봤고요. 저희가 좀 많이 논의하기로는 김영호 의원안과 고민정 의원안을 좀 많이 논의를 했고……

○**정성국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국교위 안에서 누가 이 안을 의논했느냐는 뜻이지요. 지금 국교위 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위원장님이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사무처장이라든지 어느 분 정도 선에서 의논된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참여는, 사무처 직원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저희 상임 사이에서도 이것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의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위원의 구성이 변화되고 있다, 그것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양성 차원에서 논의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이게 국교위 안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합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여기 국교위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국교위 의견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배용 위원장이 또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의견입니다.

○**정성국 위원** 이배용 위원장이 확인을 해서 국에 전달, 오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예,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려면 이제 2번 연결하면 되겠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2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성국 위원** 지금 국교위법 이 부분은 충분히 새로운 법률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9월 달에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의 뜻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그 국회 뜻 안에 학부모 위원과 학생 위원을 넣어야 합니다. 제가 국교위 할 때도 어찌 보면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 진보 성향의 학부모단체에서 한 분씩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보수 성향의 학생 그다음에 진보 성향의 학생이 한 분씩 들어와서 균형을 딱 이루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스물한 명 중에 아홉 명이 너무 많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령 뜻이 다섯 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숫자를 좀 줄이자는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뜻을 한 두 명 줄인다면 어디를 늘릴 것인가를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경험을 해

봤을 때는 일단 교원단체가 두 명이 좀 작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분 정도 늘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님이 열일곱 분 계시는데 지금 교육감대표가 들어오거든요. 교육감협의회 의장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 뜻이나 국회 뜻으로 교육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한 두세 명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국회나 대통령이 교육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딱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회나 대통령이 교육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한 명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국교위를 운영할 때 교육감들의 의견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시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협의체에서 한 명 늘리면서 대신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교육감을 별도로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명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장단체 교수단체, 교육학회단체 이런 부분들은 너무 특정 직군을 지목한 것 같아서 교장이 대표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까지 국교위가 넣기에는 저도 좀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원단체라든지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도 사실 교수잖아요, 총장이라도. 그리고 교총 같은 경우는 교장도 다 회원이거든요. 대부분 다 회원으로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교장단체 교수단체 이렇게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교육부차관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국교위를 해 보니까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교육부차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차관이 거기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21명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교육부차관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국교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부차관이 교육부의 입장이나 그런 정책 추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상근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차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김민전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위원 구성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사안 사안별로 좀 정리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국회 추천 뜻을 아홉 명에서 일곱 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분의 발의하신 의원님의 얘기가 동일해요. 이것은 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김민전 위원 아니요. 의견을 일단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가면 위원 뜻을 갖고 한 두어 시간 하게 될 겁니다.

김민전 위원님 우선 토론하시고요.

○김민전 위원 위원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국회가 누구냐 그러면 국회가 누군지 분명해요. 대통령이 누구냐 이것도 누군지 분명합니다. 교육부차관, 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고 생각하고요. 누군지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영유아 전문가라면 영유아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수백 명일 텐데 그중에 누구라고 얘기한다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교육감협의체 이것은 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표성을 주자 이 말은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학부모단체? 학부모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학부모단체. 또 학생·청년단체?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학생·청년단체 중에서 누구를, 이걸 누가 대표성을 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합니다. 교육학회 마찬가지고요. 교육학회도 여러 가지 학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체 이름을 넣으면 구성을 굉장히 민주적이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는 누군가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국회나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국회나 대통령이 정말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분들을 다 무시하고 넣는 것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안에서 조정하는 룰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느 어느 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수백 개의 수많은 중에서 어느 단체 이랬을 때 대답할 수 없는 단체들을 이렇게 넣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국회와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그런데 그 결과 국교위 안에서 이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뉴라이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됐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교위가 실제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진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완전히 파행돼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정도였지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민주당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게 나은가, 그러면 국회 뜻도 대통령 뜻도 거의 많으니까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러나 저도 그렇고 김영호 위원장도 그렇고 수많은 다른 여러 단체들을 자꾸만 넣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런 색채들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좀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랑 김영호 의원안에서는 차관이 빠져 있는데, 물론 선의로 생각한다면 차관이 그 안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차관의 말 한마디가 방향성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교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교육부로부터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교육정책을 만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이런 걸 정말 다 떠나서.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 글쎄 과연 언제 할 수 있을까? 모든 정권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욕심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아프면서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교위를 이제는 좀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자 하는 고뇌에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원단체를 둘에서 셋으로 늘렸던 것은 아까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현재 꽤나 규모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이 2개가 아니라 3개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도 역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넣었던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교수단체를 넣었던 것은 사립하고 국공립하고를 좀 나누어 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청년, 학부모 단체는 김문수 의원님안에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따로 빼는 것도 방법이지만 앞에서 국회 봉이나, 국회 봉이 될 수 있겠지요. 국회 봉에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 지금 까지도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다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와 대통령 이런 곳으로부터 좀 멀어지게끔 하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라는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렇게 해 볼게요.

이것 가지고 더 토론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고민정 의원안이 국회 봉 7명에서 학생·청년, 학부모 단체 둘을 배려하면 되니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교육부차관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지금 교육부는 차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그러면 인원을 한 명을 더 증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보니까 교원단체 셋, 교육감 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교협 둘 이렇게 되면 기본 단체들에서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장도 교수단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고민정 의원안이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부차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이 위원회 구성 변경안은 그냥 스무스하게 정리될 것 같거든요.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서지영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서지영 위원 지금 동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굉장히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만 보더라도 차관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러한 지엽적,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의 어떤 사안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 가지고 의사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지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국회의 봉이 있고 대통령의 봉이 있고 차관 봉이 있는데 차관 봉은 사실상 대통령의 봉과 같지요,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의 임명 위원 숫자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결국은 국민을 대의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그 권한을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국회와 대통령에게 그 권력과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국

회의 권한 행사만큼 가장 존중받을 수 있고 가장 구체적으로 국민께서 합법적으로 위임한 권한입니다.

지금 그 외에 다른 전문가들 이렇게 쭉 나오면서 교장단체, 교수단체 계속 쭉쭉쭉쭉 나오는 건데요. 과연 이 단체들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또 다시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 단체들이 과연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교육정책을 세우는 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이 각각의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 권한의 정당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 구성부터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과연 이 위원 구성 자체가 목표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굉장히 뚜렷하지도 않고, 이것이 국가이익에 맞는가 그리고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해 보입니다.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사실상 소위에서 법안을 하나하나 쟁점을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어떤 교육에 대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무 자르듯 두부 자르듯 딱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나 국가의 교육 방향에 대한 목표와 지향점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관 한명 들어낸다고 해 갖고 독립성이 보장됩니까? 그러면 교육부와 완전히 무관하게 국가의 교육지대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이 없이 만들어진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하시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셔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입장을 좀 제대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렇게 법안에 따라서 부분별 입장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스스로 성찰하는 내용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심도 깊게 하시고 국가교육위원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법안을 선행적으로 검토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적어도 교육부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지금 청문회가 그렇게 됐는데 임명되고 나서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짓는 법안도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고민정 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서지영 위원님께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이런 큰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서지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위원님들은 심도 깊게 검토하셨겠지요. 그러나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저희 각

위원들도 굉장히 깊이 있는 검토를……

○고민정 위원 사과하시겠다는 거지요?

○서지영 위원 그러겠습니다.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저는 법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사과할 거면 그냥 사과하겠다고 하고 끝내십시오. 사과할 테니까 서지영 위원님 법안에 대해서……

○서지영 위원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정 위원 지금 제가 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지영 위원 왜 자꾸 태도를 지적하십니까, 그렇게?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잠깐만요.

○고민정 위원 저희 법안소위가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자리이고, 장관이 없어서 법안 논의 못 하면 지금까지 법안 심의한 건 다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 보류시키시지요. 왜 논의하셨지요?

그리고 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하고도 또 교육부하고도, 죄송하지만 서지영 위원님하고는 논의 안 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하고 논의 끝에 내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얼마큼 합당한지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심의하려고 심의위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논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민전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행정부와도 같이 논의를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처음 듣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국교위야말로 정말 당파성을 떠나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국교위인데 이게 국민적인 공론화도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법안 먼저 딱 심사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로서는 솔직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제가 서지영 위원님과 김민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검토보고서를 드립니다.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오셨습니까?

○김민전 위원 예, 검토보고서는 봤습니다만 그것이 어제께 아주 급박하게 온 것이 사실인데이요.

○소위원장 문정복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입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 없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모든 법안 다 국민들한테 먼저 공개하고 국민들 의견 듣고, 그리고 이 법안 개정안을 내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 듣지 않습니까? 그것 다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그런 기준의 법률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뭐 하려 이것 하겠습니까?

○김민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발표하나 5개월 이후에 발표하나와 같은 수준의 법안이 있고요. 앞에서 제가 냈던 법안과 같이 법의 미비점을 살짝 고치는 부분과 같은 법안이 있고요. 이것은 정말 교육의 백년지대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제가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전체를 놓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고 조항별로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의 수부터 정리를 좀 해 보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위원의 수는 어떻게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게 법안심사소위의 기본적인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실 거면 제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대한 양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다 하고 마지막에 그냥 혹 하고 정리해서 보낼까요?

○**김민전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이 법과 관련해서는 입법 공청회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개정안이에요, 개정안. 제정안도 아니고 개정안이에요.

○**김민전 위원** 물론 개정안이지만 실제 내용은 제정안에 준할 정도로……

그동안에 고민정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국교위가 정말 이렇게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잘못 운영될지 몰랐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일정 동의하고요. 이 때문에 정말 교육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입장에서 국교위를 바로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 아예 공청회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법안 심사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소위원장 문정복** 공청회를 누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좀 줘보세요.

○**김민전 위원** 조금 더 교육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수가 있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누구하고? 그러니까 교육전문가 누구하고 할까요?

○**김민전 위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소위원장 문정복** 고민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고민정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육위 법안소위가 도대체, 다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안소위는 이 자리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빠르게 심사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결정짓고 넘어가는 거고요. 결정이 안 되면 다음 회의로 또 넘어가고 또 그다음 회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늘상 그렇게 해 왔지요.

아까 앞에서도 큰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일독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모든 법안들을 다 지금까지 그렇게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자는 등 아직 공론화가 안

됐다는 등, 그러면 법안을 낸 의원으로서는 이 법안은 뒤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예 볼 것도 없이 이것은 그냥 반대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김민전 위원 저는 볼 것도 없이 반대는 아닙니다. 저는 반대 아니고요.

○고민정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의 법안소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선례들을 그대로 준용해서 만약에 이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계속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 3항에 대해서 또 논의하면 되고 안 되면 또 그다음 것 넘어가면 일독이 되는 거겠지요.

○김민전 위원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이 다른 법안보다 훨씬 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이 것은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지금 우리 당의 간사님도 안 계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법안이 그냥 논의가 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간사를 대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잠시만.

○김민전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제가 법안소위에 대해서 잠깐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법안소위에 간사가 있습니까? 법안소위에 간사가 따로 있어요?

○김민전 위원 위원회에 간사가 있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법안소위에 간사를 두게 돼 있습니까? 지금 조정훈 위원이 국민의 힘 간사인데 여기 위원회로 들어오신 것은 제가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결소위원 들어간 것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은 여기 간사가 아니에요. 법안소위의 간사가 아닙니다. 그냥 위원입니다. 그런데 간사가 없어서 법안을 나중에 심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조정훈 위원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본인이 없으니 법안소위를 나중에 열자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조정훈 위원님이 꼭 있어야 법안소위를 엽니까? 그런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고요.

○김준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문정복 예.

○김준혁 위원 더 이상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서 더 진행되는 것은 오히려 법안심사하는데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십시오.

○서지영 위원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깊게 검토하시고 논의하신 부분이 다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검토하셨습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하는 거예요.

○**서지영 위원** 아니,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 검토하셨습니까?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지났는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률은 국교위 소관 법률이라 저희들은 교육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부차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했고요.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대화 상임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 각 기관과 정부와 여당 간에 심도 깊게 상의했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고요 그 토론회에 저도 참여를 했고. 또 아마……

○**서지영 위원** 어떤 토론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국교위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도 국회에서……

○**서지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좀 면czą 주십시오. 굉장히 불쾌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저도 참여한 적이 있고요. 또 의원실에서 저희 국교위에도 이런저런 의견을……

○**고민정 위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서지영 위원** 아니요, 정부 출범 이후에 심도 깊게 상의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서지영 위원한테 허락받아야 됩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잠시만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심도 깊은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상의를 좀 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대화 상임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서지영 위원님은 공식적으로 발언이 끝난 상태고요. 다음 토론 차례가 강경숙 위원입니다. 서지영 위원께서 혹여라도 미진한 질문이 있을까 봐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발언 기회는 이제 중지를 하고요.

고민정 위원님, 저기 하시지만 강경숙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시고 고민정 위원님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더 이상 법안심의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고민정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서지영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위원 앞에 두고 교육부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한테 저 위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고 팩트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를 가르치려 드십니까?

○**서지영 위원** 가르치는 건 본인이 저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태도 지적하면서.

○**고민정 위원** 한 번도 상임위 안에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 안에서는, 게시판만 보셔도 잘 아시겠지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셨겠지요. 그런 것 관심이 없으셨을 테니까요.

국교위원회하고는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정대화 상임위원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차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전부터 교육부에 제가 여기에 대한 의견 물었던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지 심도 깊게 논의한 거라고 서지영 위원한테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사실 저는 아까 김준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셔서 그냥 마무리하고 법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의견을 내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위원장께서 그래도 서지영 위원께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사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서, 사과를 하셔서 그냥 일단락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를 굉장히 조롱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웃으시네요.

○**소위원장 문정복** 웃지 마시고요.

○**고민정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고민정 위원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 묻는 것은 상대방 위원에 대한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법안소위로서 심사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정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경숙 고민정 김민전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출장 위원(1인)**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정대화